

2025학년도

(2025.1.3. 개정)

섬진학숙(기숙사) 운영규정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섬진학숙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세계로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치즈·조리 명장』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인 섬진학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 운영한다.

제2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섬진학숙운영규정이라 한다. 이하 운영규정이라 약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운영기간)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섬진학숙에 입학하여 생활하는 학생에게 적용된다. 운영기간은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기숙사운영 연간계획 수립)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학생 선발, 기숙사비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 기숙사 학생 자치회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5조(이용제한) 입사생과 관리교사, 사감 등 관리요원 외에는 섬진학숙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입사생들의 생활과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장 조 직

제6조(운영위원회) 섬진학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섬진학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7명~15명의 범위에서 기숙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 교직원 위원 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체 위원수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2024.04.01. 개정)(2024.7.11. 개정)**

- ① 본교의 운영위원회는 교직원 위원 4명, 학부모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교직원 위원은 교감(위원장), 업무담당교사(총관리교사), 여학생 관리교사, 남학생 관리 사감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은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로 한다. 단, 결원이 발생시 잔여 임기 동안의 위원을 새로 선출한다.
- ③ 총관리교사 및 여학생 관리교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간사는 기숙사를 담당하는 교직원으로 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

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4.7.11. 개정)

1.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입사 학생 선발 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소집·심의)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과 위원 5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여 제8조의 각 항을 심의한다.

제10조(의결) 운영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 (2017.12.08.개정)(2023.12.21.개정)(2024.7.11. 개정)

- ① 자치회의 임원은 기숙사 입학생으로 한다.
- ② 자치회의 임원은 자치장 1명, 위원 4명(남3, 여1)으로 한다.
 - ㉠ 남학생 위원은 3학년 1명, 2학년 2명으로 한다.
 - ㉡ 여학생 위원은 부자치장을 겸한다.
- ③ 자치회의 임원선출
 - ㉠임원선출은 기숙사 입학생의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 ㉡임기는 당해연도 1년으로 상황에 따라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
- ④ 자치회의 심의 및 의무사항
 - ㉠자치회 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자치회 소집) 자치회는 필요할 경우 **상시 소집한다.**

제 3장 학생 관리

제 1절 입 사

제12조(입사자격) 섬진학숙 입사는 입사를 희망하고 그 보호자가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학생에게 입사 자격이 있다.(2021.04.21.개정), (2023.05.15.개정)(2024.04.01.개정)(2024.7.11. 개정)

- ① **삭제**
- ② 건강에 이상이 없고, 전염병, 피부병 등 감염성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가 아닌 자
- ③ 자진 퇴사자는 1개월(방학기간 제외) 이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자

제13조(입사 절차) 관리교사는 정해진 입사시기(3, 6, 9, 12월)가 되기 전에 학년별 결원을 파악하고 보충 예정인원을 홍보하여야 하며, 섬진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2024.7.11. 개정)

- ① 섬진학숙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표-1에 의하여 보호자 연서로 된 입사 희망원을 관리교사에게 제출한다.
- ② 입사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입사 학생은 소정의 생활 안내 교육을 받고 섬진학숙에서 사용할 숙소와 학습실 좌석을 배정 받는다.
- ④ 입사자는 입사시에 별표-3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부득이하게 정해진 입사 시기 외의 시기에 입사시에도 위 조항에 따른다.**

제14조(입사자 선정) (2021.04.21.개정)

- ① 관리교사는 제12조, 13조 규정에 의거 매 분기 입사희망원을 제출한 자의 서열부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사정하여 선정한다.
- ②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①항에서 작성한 서열에 따라 3, 6, 9, 12월의 입사 이전에 선정한다. 단, 3, 6, 9, 12월 이전에 입사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 심의 의결 후 입사할 수 있다.
- ③ (우선선발) 사회적 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불편자)를 합산한 인원을 전체 입사인원의 30% 별도로 우선 선발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일반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 ④ 일반학생은 통학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타 시·도 학생을 1순위로 선발하고,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학생은 본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등·하교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2순위로 선발하며 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는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성적순에 의해 선발한다.~~
- ⑤ ~~④항의 성적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신입생(1학년) : 입학 내신성적
—— 재학생 : 어전학기 정기교사 전과목 성적(100%)
- ⑥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입사 정원의 1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⑦ 제③항,제④항,제⑥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정원에 미달될 경우 신청학생 모두를 입사자로 선정한다. 단, 12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원이 정원에 미달인 경우에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절 퇴 사

제15조(퇴사 **요건 및 기간**)(2024.04.01.개정)(2024.7.11. 개정)

- ①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자진 퇴사와 섬진학숙 규정에 의한 강제 퇴사로 구분한다.
- ② 자진 퇴사는 학생이 희망할 때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
- ③ 강제 퇴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삭제)
2. 감염되는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 신체 허약자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
5.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내에서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
6. 폭력행사, 집단 및 특수 폭행, 음주, 흡연, 금품 절취 또는 갈취, 불량 동아리 조직 및 활동, 도박(카드, 화투, 기타), 유흥장 출입
7. 자해 및 약물 남용 등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
8. 심진학숙 생활이 불량하여 운영위원회 퇴사 결정을 받은 자.

(삭제)

9. 강제 퇴사의 기간은 위반 사안에 따라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정하되, 방학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10. 강제퇴사의 시작 시점은 학생의 수업, 정기고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정한다. 단, 긴급하게 공공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 위원장은 즉시 퇴사를 명하고 운영위에서 추진받도록 한다.

제16조(퇴사 절차) 심진학숙을 퇴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보호자가 담임교사 및 관리교사와 상담한 후 별표-2의 퇴사원을 관리교사에게 제출한다.
- ② 관리교사는 퇴사원을 접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 ③ 관리교사는 퇴사가 확정된 학생에게 관리비를 정산하게 하고, 학생의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7조(퇴사자의 재입사) (2023. 05. 15.개정)(2024.04.01.개정)(2024.7.11. 개정)

- ① 제 12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재입사 할 수 있다.
- ② 자진 퇴사자의 재입사는 1개월(방학기간 제외) 이후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사가 가능하다.
- ③ 강제 퇴사자의 재입사는 강제 퇴사 기간이 끝나기 전 퇴사자의 학교 생활 등을 반영한 자료를 근거로 운영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운영위에서 심의한다.

제 3절 생활 수칙

제18조(생활지침)

- ① 심진학숙 입사생은 별표-4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입사생이 생활수칙을 위반했을 경우는 별표-5 별점규정에 의거 지도한다.

제 4장 관리교사 및 사감의 업무

제19조 (관리교사 업무) 관리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일과표 운영

2. 학습지도
3. 생활지도
4. 점진학숙 관리 및 정리
5. 숙소 배정¹⁾
6. 점진학숙 내의 각 호실, 집기, 화장실, 복도 및 기타 시설물 안전과 위생 지도
7.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 의뢰
8. 외출, 외박 및 학생 관리 · 지도
9. 입사, 퇴사에 관한 업무

제20조 (사감 업무) 사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2.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과표에 따른 생활지도
3.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
4. 건강지도, 생활지도, 청소지도 및 생활예절 지도

제 5장 재 정 (2024.7.11. 개정)

제21조(재정 운영) 기숙사 재정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 개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본인 부담 원칙
2. 시설 전반에 관한 새로운 구축이나 대대적인 수선, 자산취득성 비품구입비는 표준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지자체지원금 등으로 집행

제22조(기숙사비 징수와 집행)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숙사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징수한다.

1. 기숙사비는 매월 징수
2. 중도입사자는 입사한 날로부터 일할 징수
3.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다.
4. 집행 결과는 분기별로 학교 누리집(홈페이지)과 가정통신문에 공개한다.

제23조(기숙사비 반환) 퇴사자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 6장 보 칙

제 24조(보칙) 본 규정에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방배정시 기숙사 학생 자치위와 운영위, 사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한다. 또한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방 변경 등이 필요할 시에는 방변경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제 3조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21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23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9조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24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숙사 입사 희망원

학 번 :
성 별 : 남 , 여
성 명 :

위 본인은 20 년 월 섬진학숙에 입사하고자 보호자 연서로 희망원을 제출합니다.

- 희망자가 정원(남:64명,여:32명)을 초과할 경우 규정에 따라 선발
(사회적 배려대상자, 타시도 출신 30% 우선선발, 통학거리 및 통학 가능 여부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정원에 미달할 경우 14조 7항에 따라 입사자를 선정함

현재 거주하는 주 소	연락처(전화)	
	본인	보호자
		관계

년 월 일
학 생 명 : (인)
보 호 자 : (인)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장 귀하

성진학숙 퇴사원

제 학년 반 번
성 명 :

위 본인은 성진학숙에 입사하여 생활해왔으나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연
서로 퇴사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2024년 12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장 귀하

위 사항을 허가함 .

2024년 12월 일

미납월 (금액)	반납월 (금액)	정산여부 확 인

담 임	관리교사	교 감	교 장

서 약 서

학년학과 : ()학년()과

성 명 :

위 본인은 금번 섬진학숙에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생활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1. 자랑스러운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명예를 소중히 한다.
2. 섬진학숙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한 기물은 변상한다.
3. [학교생활규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및 [섬진학숙 생활수칙](#)을 준수한다.
4. 각종 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진다.

※강제퇴사 사항 (기숙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퇴사 될 수 있습니다.)

- 폭력행사, 집단 및 특수 폭행, 음주, 흡연, 금품 절취 또는 갈취, 불량 동아리 조직 및 활동, 도박(카드, 화투, 기타), 유흥장 출입
- 자해 및 약물 남용 등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
- 섬진학숙 생활이 불량하여 운영위원회 퇴사 결정을 받은 자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별 표 - 4

섬진학숙 생활수칙

I. 생활규칙

1. 섬진학숙을 내 집처럼 각 호실을 내 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2.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 시민 정신을 기른다.
3. 섬진학숙을 실력 향상 및 인격 도야의 도장으로 삼는다.

II. 지켜야 할 사항

1. 시간 엄수 - 기상, 세면, 학습 준비, 식사, 귀사 시간 등
2. 정숙 유지 - 실내 정숙, 조용히 걷기, 천천히 문 여닫기, 녹음기 소리 등
3. 청결 유지 - 항상 털고, 쓸고, 닦고, 정리 정돈하기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발생은 최소화한다.
4. 개인 위생 - 발씻기 : 매일 취침 전 필수
샤 워 : 수 시
면 도 : 수 시
5. 세탁 및 소독 - 개인 의류 및 침구류는 항상 청결하게 한다.
6. 건강 관리 - 아침 점호 시 국민 체조 및 체력관리 운동 실시
- 편식 및 과식 금지
- 개인 비상 상비약 준비
- 외출 외박 시 특별 영양 섭취
7. 물자 절약 - 전등은 필요할 때만 켜고, 수도물은 필요량만 사용하기

III. 강제퇴사

1. 섬진학숙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기숙사 운영위의 퇴사 처분을 받은 자.
2. 감염되는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 신체 허약자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
5.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 내에서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
6. 폭력행사, 집단 및 특수 폭행, 음주, 흡연, 금품 절취 또는 갈취, 불량 동아리 조직 및 활동, 도박(카드, 화투, 기타), 유흥장 출입
7. 자해 및 약물 남용 등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

IV. 금지할 사항

1. 섬진학숙 및 호실 내에 인화 물질(성냥, 라이타 등) 반입
2. 전열기(가스 및 석유 버너, 전기 곤로) 반입
3. 시설물 훼손 및 파손
4. 타인 물건 무단 사용 및 절취 또는 갈취
5. 음주, 흡연, 카드놀이
6. 무단 외출
7. 배정된 호실 외 다른 호실 무단 출입
8. 폭력 행사 및 폭언, 언쟁
9. 불량 동아리 조직 및 활동
10. 기타 다른 입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고성, 방가, 소란, 학습 방해, 사행 행위 등)

V. 외출 · 외박 절차

1. 외출
 - 가. 정기 외출 외의 외출은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나. 외출 시간은 짧게 하고 귀사 시간을 엄수한다.
2. 외박
 - 가. 매주 금, 토요일, 학교 휴무일은 외박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금, 토요일, 휴일 이외의 외박은 보호자의 유선 통보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외박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사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VI. 개인이 준비할 물건

1. 개인 침구(1인 침대 깔개와 덮개용 이불)
2. 개인 의류(체육복, 방한복 등)
3. 개인 세탁 도구 준비(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4. 개인 물 컵 및 개인 용구
5. 개인용 상비약 준비
6. 기타 섬진학숙 생활에 필요한 물품 일체

상점.벌점 규정

벌점		
조항	내 용	벌점
1	도박, 음주, 흡연, 구타(폭행), 금품 갈취, 절도	퇴사
2	타인 취침 방해(실내 소란), 점호 준비 불량(청소, 지각),	-5
3	허락받지 않은 전열기구 사용, (시험기간) 학습방해, 외출.외박시 귀가 시간 미준수, 무단 외출, 헬스장 정리정돈 불량(사용자)	-10
4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상호간 폭력 행사, 무단 외박	-15
상점		
조항	내 용	상점
1	기숙사 내 청소, 정리정돈, 점호상태 등 생활 전반의 양호함	+5점
2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정신 발휘	+10점
3	(1,2항 외에) 기숙사 행사에 적극 참여하거나, 기숙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	+15점

- 사감과 기숙사 운영위는 바람직한 기숙사 생활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담임, 교과 선생님들과 수시로 협의하여 기숙사 공동체 질서 확보에 힘써야 함.
- 도표의 벌점 부여가 어려운 생활지도는 사감 협의회를 거쳐 범위 내 벌점 부여.
- 벌점이 -30을 초과하면 퇴사. 벌점이 -20점에 도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여 시간당 10점을 차감할 수 있음.(담임,사감)
- 학생들이 자신의 상.벌점 상황을 알도록 게시해야 함.
- 상점은 벌점에 대한 삭감(1:1) 효력이 있으며, 기숙사 모범 학생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음.
- 상.벌점의 부여는 사감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확정.

섬진학숙 시정표 및 사감업무

평 일(초과근무 : 10시간)			
시 정	내 용	사감역할(초과근무)	인정시간
16:30 - 18:00	석식 및 여가활동	식사 및 생활지도, 안전점검	1.5h
18:00 - 22:00	자기주도 학습 (방과후 교육포함)	자기주도 학습지도	4h
22:00 - 23:00	청소 및 점호	생활교육	1h
23:00 - 24:00	취침 준비 및 취침	생활지도	1h
00:00 - 01:00	취침	수면시간(6h)	6h
00:01 - 06:00			
06:00 - 08:30	기상(07:00)/조식/청소	생활·식사·등교지도, 안전점검	2.5h
공 휴 일(초과근무 : 10 시간)			
시 정	내 용	사감역할(초과근무)	인정시간
16:30 - 18:00	입사	안전점검	1.5h
18:00 - 22:00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지도	4h
22:00 - 23:00	청소 및 점호	생활교육	1h
23:00 - 24:00	취침 준비 및 취침	생활지도	1h
00:00 - 06:00	취침	수면시간(6h)	6h
06:00 - 08:30	기상(07:00)/조식/청소	생활·식사·등교지도, 안전점검	2.5h

※ 기숙사 출입 금지시간 밤 10시

위 시간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알 림 ●

- 개인정비 : 각실 및 학습실 좌석 청소 및 정리 정돈
- 간식은 지정된 시간에만 먹을 것.
- 휴식 시간외에는 절대 이동 금지.
- 퇴실할 때 창문 및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잘 잠글 것.
- 침구는 항상 보기 좋게 개어 놓을 것.

입사 학생 안전관리

1. **점호** : 점호는 학생들의 인원 점검과 건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호 시간: 동절기 아침 7시, 야간 10시, 하절기 아침 7시, 야간 10시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아침 점호는 별도로 정함
3. 야간 점호 이후 외출 금지(남, 여 기숙사 자치회와 협의 후 자체 규정)
4. 점호하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 지양
5. 학생은 점호 시 점호자의 지시나 요구 등에 따름
6. 기숙사 자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 가능

2. **사고 예방** : 사감은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생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외출 및 외박 학생명단 작성
2. 외부인 기숙사 출입은 미리 학교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함
3. 주변 수시 순찰
4. 점호 시간 준수(부득이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 기숙사 자치회가 점호)
5. 점호 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 방 출입금지
6. 전열기구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미리 승인)
7. 방화기구와 비상구 수시 확인
8. 학생 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
9. 시설물 수시 점검
10. 연락 체제 구축(학생들에게 안내와 홍보 실시)
11. 각 호실별 해충,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유무 등 정기적 점검
12.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13. 상비약 비치(약품 관리 일지 작성)
14. 주변 응급의료원, 경찰관서, 소방서 연락 체제 구축
15.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기술 숙지

3. **사고 조치** :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 처치 최우선
2.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

3.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
 4.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 시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 결정
 5.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조사는 학교 폭력 담당 교사가 속해 있는 전담기구에 의뢰
 6. 가해자 또는 피해자 조치도 반드시 전담기구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조치
 7.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
- 4. 환경위생관리 :**
- ① 기숙사 시설의 청결과 소독 상태를 철저히 관리한다.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
 - ③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 5. 시설물 점검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시설물의 현황과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 6. 재난 안전관리 :**
- 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내에 사고지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재난 대응 관계기관 연락망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대비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한다.